

이 사 회 의 록

1. 회의의 종류 : 2026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
2. 회의의 통지일자 : 2026. 06. 12(금)
3. 회의의 개최일시 : 2026. 06. 23(화) 18:00 ~ 19:30
4. 회의의 개최장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222(연경반점)
5. 출석 현황
 - 가. 참석대상 임원 : 이사 8명, 감사 2명
 - 나. 개의 정족수 : 재적이사의 과반수 4명
 - 다. 출석 이사 : 대표이사 김명식
이사 한 혁, 백재흠, 민경훈, 류혜원, 최영민, 김영길, 조 일(총8명)
 - 라. 출석 감사 : 감사 윤현노(총1명)
6. 심의 안건
 - 제1호 의안 : 선산복지재단 정관 변경(안)
 - 제2호 의안 : 2026년도 성부정신수양원 시설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제3호 의안 : 한우리보호작업장 운영규정 변경(안)
7. 회의 내용
 - 가. 성원보고 개회선언
 - 의장 김명식 : 법인정관 제8장 제3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적이사 8명중 8명이 참석하여 이사회가 성원이 되었기에 사회복지법인 선산복지재단 2026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 개최를 선언하다.
 - 나. 의장 인사
 - 의장 김명식 : 2026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 의장을 맡은 대표이사 김명식의 인사와 더불어 심의안건에 관한 이사들의 적극적인 의사 개진을 바란다.
 - 다. 전차 회의록 접수, 승인
 - 의장 김명식 : 2026년도 정기이사회 전차 회의록 승인 안건을 상정하고 의장이 낭독 후 이의 여부를 물은 결과 참석이사 전원이 '이의 없습니다.' 라고 답하여 전차 회의록을 원안대로 접수, 승인하기로 선포하다.
 - 라. 부의안건 상정 및 심의
 - 의장 김명식 : 제출된 총3개의 부의안건 외 추가제출 안건 여부를 물은 결과 참석이사 전원이 '없습니다.' 라고 답하여 총3개의 부의안건을 심의안건으로 선포하다.



《 제 1 호 의안 : 선산복지재단 정관변경(안) 심의 》

○ 의장 김명식 : 법인 정관 변경(안)을 상정하고 회의자료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상세히 설명하다.

□ 제안설명

법인 정관 제4조(사업) 제2항의 근거 법령으로 명시되어 있는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정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이에 기존 '정신보건법 제10조의 정신요양시설 설치운영사업'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정신요양시설 설치운영사업'으로 변경하여 관련 법령을 반영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신 · 구 정관 부칙 대비표

변경전의 정관 조문(현행)	변경후의 정관 조문(개정안)	변경 사유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4조 (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 복지시설 중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운영사업 2. <u>정신보건법 제10조의 정신요양시설 설치운영사업</u>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운영사업	제4조 (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 복지시설 중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운영사업 2. <u>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사업</u>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운영사업	◎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제2항 내용 변경

○ 이사 한 혁 : 의장의 설명대로 정관 제4조 제2항의 근거 법령이 「정신보건법」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현행 법령과의 정합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또한 법인의 목적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정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으로 이에 정관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하다.

○ 이사 최영민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정관상 근거 조항을 현행화하는 것은 법인의 적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한다. 금번 정관 변경은 단순한 법령명 및 조문 정비로서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있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사료됨으로 이사 한 혁의 동의안에 재청하다.



- 의장 김명식 : 이사 한혁의 동의안에 대하여 가부를 묻다.
- 참석 이사 : 이사 한혁의 동의안에 전원 찬성하다.
- 의장 김명식 : 선산복지재단 정관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 선포하다.

《 제 2 호 의안 : 2026년도 성부정신수양원 시설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

- 의장 김명식 : 2026년도 성부정신수양원 시설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고 회의자료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상세히 설명하다.

□ 제안설명

1. 추경예산의 주요내용

- 성부정신수양원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액 3,263,422천원에서 21,678천원이 증가한 3,285,100천원으로 변경

2. 추경예산의 주요 사유

- 청년인턴 돌봄보조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반영, 조리원 정년연장에 따른 호봉 재산정 반영 및 입소료 인상에 따른 세입 증액 등을 반영

- 이사 김영길 : 우리 법인의 산하시설인 성부정신수양원의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 예산(안)은 회의자료를 통한 설명대로 청년인턴 돌봄보조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반영, 조리원 정년연장에 따른 호봉 재산정 반영 및 입소료 인상에 따른 세입 증액 등 예산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므로 이를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하다.

- 이사 민경훈 :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회계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사 김영길의 동의안에 재청하다.

- 의장 김명식 : 이사 김영길의 동의안에 대하여 가부를 묻다.

- 참석 이사 : 이사 김영길의 동의안에 전원 찬성하다.

- 의장 김명식 : 2026년도 성부정신수양원 시설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선포하다.

《 제 3 호 의안 : 한우리보호작업장 운영규정 변경(안) 심의 》

○ 의장 김명식 : 한우리보호작업장 운영규정 변경(안)을 상정하고 회의자료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상세히 설명하다.

□ 제안설명

한우리보호작업장의 서비스이용 나이를 만 60세로 일률적으로 제한하던 기존 규정을 개선하여, 건강상태 및 업무수행능력이 적정한 이용자에 대하여 사례회의를 거쳐 1년 단위로 이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이를 통해 이용자의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하고 개인별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한우리보호작업장 운영규정 변경전후 비교표

조 항	변경전의 운영규정 조문	변경후의 운영규정 조문	비 고
	제9장 이용장애인 복무규정	제9장 이용장애인 복무규정	
제9장 이용장애인 복무규정	<p>제27조(종결 / 사후관리)</p> <p>① 사망하거나 건강상 이유로 활동이 불가능할 때 ② 직업능력이 우수하여 일반고용으로 전환할 때 ③ 본인의 욕구에 의해 더 이상 이용을 원치 아니할 때 ④ 합당한 사유없이 10일 이상 출석치 아니 하였거나 개인사정으로 한달이상 출석치 못하여 시설발전을 저해 할 경우 ⑤ 동료들과의 불협으로 직업활동을 상습적으로 저해하거나 시설에 손해를 끼쳤을 때 ⑥ 직업능력평가에서 최하위 1명(정원의 2.2%)은 시설의 발전을 위하여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다. ⑦ 종결 후 사후관리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⑧ 사후관리 방법은 방문,정보제공,전화상담 등 케이스별로 적용하여 시행한다. ⑨ <u>훈련생의 서비스 이용 나이는 만60세로 제한한다.</u></p>	<p>제27조(종결 / 사후관리)</p> <p>① 사망하거나 건강상 이유로 활동이 불가능할 때 ② 직업능력이 우수하여 일반고용으로 전환할 때 ③ 본인의 욕구에 의해 더 이상 이용을 원치 아니할 때 ④ 합당한 사유없이 10일 이상 출석치 아니 하였거나 개인사정으로 한달이상 출석치 못하여 시설발전을 저해 할 경우 ⑤ 동료들과의 불협으로 직업활동을 상습적으로 저해하거나 시설에 손해를 끼쳤을 때 ⑥ 직업능력평가에서 최하위 1명(정원의 2.2%)은 시설의 발전을 위하여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다. ⑦ 종결 후 사후관리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⑧ 사후관리 방법은 방문,정보제공,전화상담 등 케이스별로 적용하여 시행한다. ⑨ <u>서비스이용 나이는 만60세를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건강 및 업무수행능력을 고려, 사례회의를 통하여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여 운영할 수 있다.</u></p>	제27조 9항 내용 일부 변경

○ 이사 백재흠 : 제안설명과 같이 서비스이용 나이를 만 60세로 제한하던 기존 규정을 개선하여 이용자의 건강상태 및 업무수행능력을 고려한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하다. 사례회의를 통해 적격 여부를 심의하고 1년 단위로 이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서비스 연속성과 직업재활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하다. 이에 운영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하다.

○ 이사 조 일 : 이용자 중심의 탄력적인 운영과 서비스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이사 백재흠의 동의안에 재청하다.

○ 의장 김명식 : 이사 백재흠의 동의안에 대하여 가부를 묻다.

○ 참석 이사 : 이사 백재흠의 동의안에 전원 찬성하다.

○ 의장 김명식 : 한우리보호작업장 운영규정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 선포하다.

다. 폐회

- 의장 김명식 : 기타 토의사항 여부를 묻고, 없으면 폐회 동의 바라다.
- 이사 한 혁 : 선산복지재단의 2026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회의 폐회를 동의하다.
- 이사 류혜원 : 이사 한혁의 폐회 동의에 재청하다.
- 참석이사 : 전원 폐회를 찬성하다.
- 의장 김명식 : 선산복지재단의 2026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회의 폐회를 선언하다.

- 참석이사 전원이 아래와 같이 날인하다. -

대표이사 김 명 식



이 사 한 혁



||인도출회||

백 재



민 경



류 혜



최 영



김 영



조



감 사 이 치



윤 현

